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처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 기타 지역에 반려동물놀이터,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조 제목 ‘반려동물 등에 대한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로 변경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쉼터 등을 설치 운영’ 조문 삽입 (안 제16조)

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조문 삽입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7.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말한다.” 를 신설한다.

제16조 제목 “(반려동물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를 “(반려동물 등에 대한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로 하고, 조문 중 “구청장은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를 “구청장은 공원 또는 기타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로 한다.

제18조 제1항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를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2항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를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1 - 6 (생 략) <u><신 설></u></p>	<p>제2조(정의) 1 - 6 (현행과 같음) 7. 반려동물 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말한다.</p>
<p>제16조 (반려동물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 ----- -----.</p>	<p>제16조 (반려동물 등에 대한 <u>시설운영 및 교육·홍보</u>) 구청장은 <u>공원 또는 기타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u> ----- -----.</p>
<p>제18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u>한다</u>.</p> <p>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u>방사할 수 있다</u>.</p>	<p>제18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u>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 ----- 방사<u>하여야 한다</u>.</p>